

【 3 】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일자 : 2006. 6. 7.

제 출 자 : 이종호의원의 2인

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는 다음과 같이 함.
 - 1. 정례회의 회기 : 36일 이내
 - 2. 임시회의 회기 : 매 회기별 15일 이내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제39조,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2조(회의 총 일수)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례회의 회기 : 36일 이내
2. 임시회의 회기 : 매 회기별 15일 이내

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 2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<u>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개최) (삭제)</p> <p><u><신설></u></p> | <p><u>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제38조 및 제39조,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운영에 -----</p> <p>제2조(회의 총 일수)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 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정례회의 회기 : 36일 이내 2. 임시회의 회기 : 매 회기별 15일 이내</p> <p>제2조의2(개최)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</p> |